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한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제 조 소	화장품제조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 조 유형			
책임판매업 겸업 여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